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9월 24일, 강경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1.26.) : 상정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8.)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

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11차 전체회의(2025.12.9.)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경숙 의원)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심

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교육 저연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유아 대상의 사교육 과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의 중요성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안 제12조의2의 학습자 모집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과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에 있어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 2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나. 부칙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수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3조제1항제2호의2 중 “실시한 경우”를 “실시한 자”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제23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u><신설></u> 3. ~ 10. (생략) ② (생략)	제23조(과태료)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 시한 경우</u>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3조(과태료) ① -- ----- ----- ----- -----. 1.2. (개정안과 같 음) 2의2. ----- ----- -----<u>실시 한 자</u> 3. ~ 10.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의 행정처분에 관 한 적용례) 제17조</u>
--	---	---

		<u>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초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과외교습”이란 <u>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u>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5.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유아교육법</u> 」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u>초등학교</u>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u>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 12. (생략)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7. ~ 12. (현행과 같음)

② -----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략)

2. ~ 7. (생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략)

2. ~ 6. (생략)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 설>

-----.

---제1호의2에-----

-----.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③ -----

-----.

-----.

-----.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

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